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73호

##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1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# 2. 제정이유

중독자의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추가하여 창원시민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
- 현행 :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변경 :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나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다.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
(안 제3조 및 제4조)

라.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)

마.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8조)

바.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~제13조)
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
-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함

사. 센터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(이용료 미발생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전홍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0.

발 의 의 원 : 전홍표 · 권성현 · 김경희 · 김남수 · 김묘정  
김상현 · 김수혜 · 김영록 · 김우진 · 문순규  
박선애 · 박해정 · 백승규 · 서명일 · 성보빈  
심영석 · 안상우 · 오은옥 · 이우완 · 이종화  
이천수 · 진형익 · 홍용채 의원(23명)

찬 성 의 원 : 황점복 의원(1명)

## 1. 제안이유

중독자의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추가하여 창원시민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
- 현행 :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변경 :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나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다.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라.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

(안 제5조)

마.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8조)

바.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~제13조)
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

-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함

사. 센터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(이용료 미발생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나. 현행 조례

##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설치)**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4조(위치)** 센터는 각 보건소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

- 가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- 나. 정신질환자의 발견·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
- 다.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
- 라.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의료 상담
- 마.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- 바.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
- 사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
- 아.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
- 자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
2.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- 가.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- 나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
- 다.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라.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

마.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

바.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

사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

**제6조(이용 제한)**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
2.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4.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7조(위탁 운영)**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영 지원)**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**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



회를 둔다.

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, 조정 및 사업계획 검토
2.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
4.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각 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,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.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(위탁의 경우 센터장)이 위촉한다.
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
2.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
3. 회복 당사자 및 가족
4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** ①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, 조정 및 사업계획의 검토

2.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3.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

4.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,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.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(위탁의 경우 센터장)이 위촉한다.
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

2.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, 협력기관 관계자

3. 회복 당사자 및 가족

4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1조(위원의 임기)** 센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2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연 4회

2. 임시회의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③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.

제3조(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에 따라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4조(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「정신건강사업안내」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등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한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사업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
  - 나.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

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·지원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·지원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,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.

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
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
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
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4.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



다)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
## ■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 <일부개정 2019.8.14.>
3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한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사업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
  - 나.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

**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)** ①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창원시 보건소에 설치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,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단,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.

1.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3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한다. 단, 계약사항 위반,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4조(인력)** 센터는 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, 정신건강전문요원,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2. 정신질환자의 발견·등록 및 의뢰
3.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
4.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 상담
5.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6.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
7. 정신질환자·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
8.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장 및 직원, 정신건강자문의,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.

**제7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2.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3.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

**제8조(운영비)**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이용료 등)** ① 센터 이용자에게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②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
2.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
3.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4.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회계관리)**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·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,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이용제한)**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환자
2.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